

#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0
----------	------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 제2조)
- 다. 동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령 조문 변경(안 제1조)
- 라. 동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5. 9.(수) ~ 5. 21.(월) (12일간)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교통정책과**

##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를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특별회계”를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운영근
	팀장 직위·성명	교통정책팀장 한종수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장명신 031-790-5026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u>	<u>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 「 <u>도시 교통정비 촉진법</u> 」 제31조 ----- ----- <u>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u> ----- -----.	제1조(목적) ----- 「 <u>도시 교통정비 촉진법</u> 」 제49조 ----- <u>교통사업 특별회계</u> ----- -----.
제2조(세입) <u>이 특별회계</u>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 16. (생략)	제2조(세입) <u>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u> -----.  1. ~ 1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제8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